

## 2013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국내에서 공정한 지재권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중소·중견기업에게 법률상담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2013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7.  
특 허 청 장

### I.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 < 사 업 목 적 >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권리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 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가. 지원분야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확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직접 대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침해소송지원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침해 관련 민사소송 분쟁을 겪고 있는 경우

## 나. 신청자격

지원분야	신청자격	관련 법령
서류작성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수행자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24조 및 제25조)
만 19세미만인 자	-	
직접대리 및 침해소송지원	위 서류작성 신청자 모두	-
	영세개인발명가(월수입 220만원 이하)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다. 의무사항(침해소송지원의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승소시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하여 반납

## 2. 지원내용

상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산권 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상시 상담, 방문 및 순회상담은 예약제 실시 상담</li> <li>- 상담 사건에 대해서 서류작성, 직접 대리, 비용지원 여부 결정</li> </ul>
서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출원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 심판청구서 등의 서류작성 지원</li> </ul>
직접 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 사건에 대하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의 직접 대리 지원</li> <li>- 단, 심판청구 또는 소제기에 소요되는 관납료와 패소에 따른 심판·심결취소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li> </ul>
침해소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당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침해 관련 민사소송비용으로 지원</li> <li>- 단,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에서 지원</li> <li>○ 승소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공사례금으로 비용지원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신청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5% 이내에서 성공 사례금을 지급</li> </ul>

## 3. 지원절차

### 서류작성 및 직접 대리



### 침해소송지원



### 가. 신청·접수

- 신청자격자는 지원분야별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제출

## 나. 지원심사

- 상담센터에서 등록가능성(또는 승소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다. 담당변리사 및 수행변호사 지정

- 서류 작성 및 직접 대리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상담센터의 소속변리사를 담당변리사로 지정하고, 민사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는 신청인이 변호사 POOL 내에서 수행변호사를 선택

## 라. 소송비용 지급·반납 및 성공사례금 지급

-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금은 상담센터에서 신청인을 대신하여 수행변호사에게 지급하며, 승소시 수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환수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상담센터에 반납(미반납시 집행예비절차 등 회수절차 강행)

##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가. 신청기간 : 수시

-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는 예산 소진시 종료

### 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 \* 신청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http://www.kipra.or.kr)) 또는 상담센터 홈페이지([www.pcc.or.kr](http://www.pcc.or.kr)) 참조 (구비서류는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 다.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또는 e-mail로 제출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 라. 문 의

- 전 화 : 02-553-5861, 02-6006-4300 팩 스 : 02-553-5865, e-mail : [pcc@pcc.or.kr](mailto:pcc@pcc.or.kr)

### 마. 사업설명회 : 아래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 참조

## II.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 사업

### < 사업 목적 >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 1.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

#### 가. 신청자격

-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 대기업 : 기업간 협의체 컨설팅 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부담금 100%

#### 나. 지원내용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수출 전 사전분석 컨설팅	수출 전 또는 수출 중인 제품에 대한 경쟁기업과의 분쟁발생 위험성 사전분석 및 회피설계 제공
특허보증 대응 컨설팅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한 분쟁 위험성 분석, 회피 설계, 특허보증조항 검토 제공
전시회 참가 전 분쟁예방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예상되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문제특허 분석 지원
분쟁 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기업의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의 분쟁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라이선스 전략 컨설팅	라이선싱 타결을 통해 분쟁 확대를 막고 불평등 조건의 합의로 인한 로열티 피해방지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자사 해외권리 유효성, 침해주장 가능성 분석 및 단속방안 컨설팅, 악의적 선등록상표 및 지리적 표시 무효화
분쟁피해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에서 행정·법률 절차 대응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검토 및 기술검토 컨설팅

\*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한도액 및 지원비율 >**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40백만원 (상표 20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참여자×25백만원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 \* 컨설팅 금액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분쟁확대예방전략/라이선스전략/권리행사전략/분쟁피해예방전략 컨설팅의 경우 최대 50백만원 까지 가능

**다. 지원절차**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절차 >**

<b>신청 및 접수</b>	신청기업 → 보호협회(e-mail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심사일정 통지
<b>선정심사</b>	발표심사 및 수행기관 매칭 ↓ 계약일정 통지
<b>과업내용 조정 및 계약</b>	지원기업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
<b>컨설팅 착수 및 평가</b>	수행기관 → 보호협회, 심사위원회(중간·최종보고)

**< 향후 일정 >**

일 정	기 간	기 타
신청 및 접수	2.7~2.20	신청방법 및 문의처 참조
선정심사	2.25~3.8	심사일정 개별 통지
계약	3.11~3.15	-
착수 및 평가	3.18~	평가(중간·최종 보고) 일정 개별 통지

\* 상기일정 변경 가능

○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www.kipra.or.kr](http://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차수별 예정지원 기업수를 고려하여 선정심사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선정심사)** 지원기업 및 희망수행대리인의 발표심사 후 지원결정

\* [선정기준] 정량(50점) 및 정성(50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 8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 희망수행대리인은 분쟁대응전문가 POOL에서 선택가능하며, 필요시 기존 거래로펌 활용가능

- (계약) 컨설팅 범위 확정 후 계약체결
  -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기업부담금 납부
- (착수 및 평가) 계약 내용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 및 수행하고, 수행내용 평가를 위해 보고회(중간, 최종) 개최
  - \* [의무사항] 기업담당자 1인 이상 전담 협조 및 보고회 개최 시 해당기업 임원 참석

## 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및 향후일정
  - 신청기간(1차) : 2013. 2. 7 ~ 2. 20
  - \* 분쟁확대예방/분쟁피해예방/라이선스 전략 컨설팅의 경우 수시신청 가능
  - \* 2차신청기간(예정) : 4월 1주~2주(3차 이후는 추후공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사업공고 참조
- 신청방법 : e-mail 제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1주 이내)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전화 : 02-2183-5872~8
  - e-mail : ipkipra@kipra.or.kr
- 사업설명회 : 아래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 참조

## 2. 기업간 협의체 운영

### 가. 구성요건

- 3개 업체 이상(중소·중견기업 2개 업체 이상 포함)의 기업군으로 구성

#### < 기업간 협의체 목적별 유형 >

목적별 구분	세부 내용
공동분쟁피해 예방	심판·소송에 의한 피해확대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
공동분쟁발생 예방	분쟁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 일부 기업이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포함
공동라이선스	라이선스 전략을 공동으로 펼치기 위한 상호 협력
공동피침해 대책	피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 나. 운영절차

### < 기업간 협의체 운영 절차 >

기업간 협의체 등록 신청	신청기업 → 보호협회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기업간 협의체 결성	협의체 구성요건 만족시 협의체 등록부에 등재
↓	
상시지원	상시지원 범위 및 내용은 기업간 협의체별로 협의

-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수시 접수)
  - \* 신청 전 보호협회와의 사전협의 필요
  - \* [기구축된 기업간협의체 참여] 기구축된 협의체의 참여사 추천을 통해 추가등록 가능
- (운영방안) 협의체 결정 후 정기회의 진행하고, 필요시 상시지원 및 컨설팅 신청 가능

## 다. 지원내용

### < 기업간 협의체 상시지원 내용 >

지원내용	내용	해당대상		
		중소	중견	대기업
교육	· 교육주제 : 국제 지적권분쟁 관련 사항 (조사·분석·연구 포함)	○	○	○
정보제공	· 연간 2건 이하의 외부보고서 구입 지원	○	○	○
자문서비스	· 자문위원으로부터 연간 20시간의 무료 지적권 법률 자문서비스 제공	○		
법률의견서	· 외부 특허의 비침해·무효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법률의견서 작성 제공	○	○	

## 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적권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전화 : 02-2183-5872~8
  - e-mail : ipkipra@kipra.or.kr
- 사업설명회 : 아래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 참조

### III.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 사업 목적 >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지 지재권 창출 및 지재권 애로 사항 해결 지원

#### 1.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sup>1)</sup> 또는 중소·중견 기업<sup>2)</sup>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1)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 사업자

2)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비용 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등록	현지에서 상표나 디자인 출원, 등록을 진행할 경우 소요 비용과 진행 절차 지원 - 신청서 접수 후 신청자격심사를 통과한 권리에 한하여 지원 - 등록 비용은 출원 지원을 받은 권리에 한하여 지원
	세관 지재권 등록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을 해당 국가 세관에 등록할 경우 비용과 진행 절차 지원
	피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 구제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행정구제에 따른 비용 및 절차 지원
	민·관 합동 파견단	중국내 지재권 집행 공무원과 현지 진출 기업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 지원
지재권 상담		현지 국가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와 관련하여 지재권 상담 수시 지원 - 전화, e-mail, 내방 및 현지 출장 지원 - 필요시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전문 상담 지원

\* 각 사업별 타 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IP-DESK 홈페이지 사업 안내 참고

## 2. 비용 지원

구분	지원 비율
상표·디자인 출원, 등록	현지 소요 비용의 50%지원(1개 업체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건 이내 - 태국 : 500\$/건 이내 - 미국 :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이내
세관 지재권 등록	현지 소요 비용의 50%지원(1개 업체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건 이내 - 태국 : 500\$/건 이내 - 미국 : 1,000\$/건 이내
피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구제	현지 소요 비용의 70%지원(1개 업체당 1건) - 3,000\$(행정단속 시 5,000\$)이내
민·관 합동 파견단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 ‘현지 소요비용’은 IP-DESK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말함

##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수시(단, 비용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로 신청
- 문의처 : IP-DESK 홈페이지([www.ip-desk.or.kr](http://www.ip-desk.or.kr)) 또는 아래 연락처 참고
  - 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DESK(02-2183-5896, [www.kipra.or.kr](http://www.kipra.or.kr))
    - 주 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e-mail : [ip-desk@kipra.or.kr](mailto:ip-desk@kipra.or.kr)
  - ② KOTRA IP-DESK(02-3460-7356,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주 소 : (137-749)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해외투자사업처
    - e-mail : [wookycha@kotra.or.kr](mailto:wookycha@kotra.or.kr)

## IV. 기타

### 1. 수출기업 지재권분쟁 내비게이션 운영 (IP-NAVI)

#### < 사 업 목 적 >

국외 진출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쟁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 가. 제공정보

- 일일분쟁속보, NPEs 뉴스레터, 분쟁동향 연구보고서, 주요국 지재권 판례정보 및 해외지재권보호 가이드북 등을 업종, 국가, 쟁점별로 제공

#### 나.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NAVI([www.ip-navi.or.kr](http://www.ip-navi.or.kr))
- 전화 : 02-2183-5892
- 팩스 : 02-2183-5899
- e-mail : [sylim@kipra.or.kr](mailto:sylim@kipra.or.kr)

### 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

#### < 사 업 목 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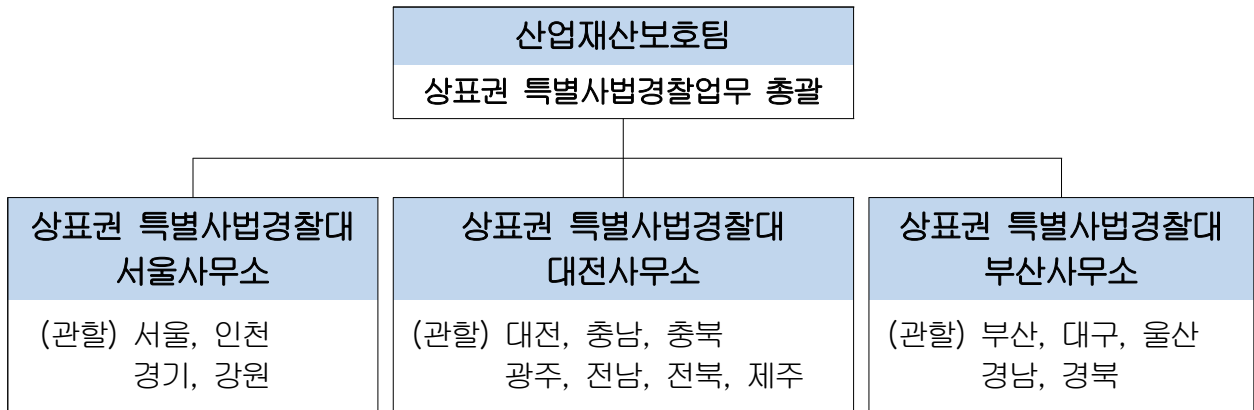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시킴으로써 산업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 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

-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을 판매·수입·수출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관한 범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상표법 제93조)에 관한 범죄

## 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 및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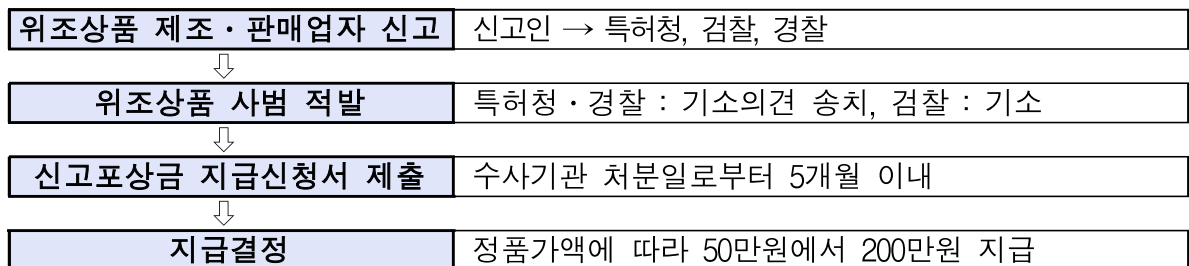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소속하에 서울, 대전, 부산 3개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 위조상품범죄 제보 및 문의처
  - 위조상품 제보전화 : 1666-6464
  - 온라인 위조상품 제보센터 : [www.brandpolice.go.kr](http://www.brandpolice.go.kr)

## 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 신청자격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기여한 신고인
  - \* 지급근거 :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제721호)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3.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 < 사업 목적 >

영업비밀\*의 생성·관리·입증 단계까지의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관리 활동을 통합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영업비밀은 비밀로 취급되는 기술상 정보 및 경영상 정보를 총칭

#### 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침해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서비스 운영

#### 나. 영업비밀 표준관리 시스템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을 통한 컨설팅 및 최소 인력·비용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 영업비밀 취급관리, 인적자원 관리, 통계현황 관리, 원본등록 및 증명기능 등

#### 다. 영업비밀 법률·관리 상담

- 전화·인터넷·방문 및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를 통한 무료 법률 및 관리 상담 제공

#### 라. 영업비밀 보호 교육

- 기업 대상 방문·순회·정기교육, 컨퍼런스 등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이론·실무 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교육 콘텐츠 배포

#### 마. 문의처

- (재)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http://www.tradesecret.or.kr))
- 전화 : 1666-0521
- 팩스 : 02-6915-1549
- e-mail : tsep\_help@kipi.or.kr

※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

일정	장소	문의
2.14(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02-2183-5872~8

\* 지재권 소송보험 사업은 수행보험사 선정이후 추후 공고 예정(2월 내)